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공정선거지원단	1명	'24. 11. 4. ~ '25.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원 전환 대상이 아님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p>「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p>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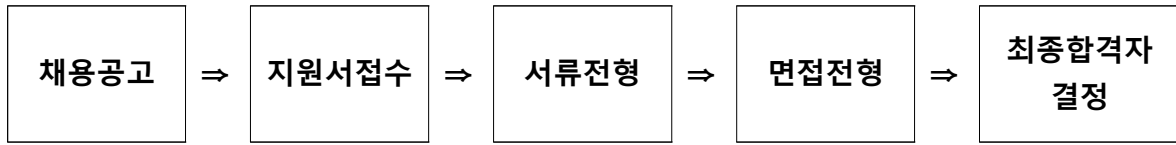
○ 선발 우대요건 : 차량운전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항목에서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3명(선발인원의 3배수 합격)

구분	선발방법
서류전형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서류전형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30점),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20점), 비상근무 용이성(10점), 운전가능 여부(10점), 자기소개서 충실성(30점), 기타 가점(사회형평 등 3점)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면접전형

구분	선발방법
면접전형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사회형평 등)

※ 평가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공정선거지원단	1명	2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8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2명 이내)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더 8개월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모집		'24. 10. 14.(월) ~ 10. 21.(월)	홈페이지 등
심사	서류 전형	'24. 10. 23.(수)	
	면접 전형	'24. 10. 28.(월) 14:00(예정)	
서류 합격자 발표		'24. 10. 24.(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개별 별도 통보 없음)
최종 합격자 발표		'24. 10. 30.(수)	홈페이지, 개별 연락
채용일		'24. 11. 4.(월)	

5. 지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원서접수 기간 : '24. 10. 14.(월) ~ 10. 21.(월) 18:00까지
- 지원서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penletter21@nec.go.kr) 접수
 - 등기우편 접수(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 * 접수 마감일 10. 21.(월) 18:00까지 메일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지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우대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제출대상	제출서류
	우대사항 대상자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p>※ 우대 자격증 사본,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p>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공정선거지원단	‘24. 11. 4. ~ ‘25. 6. 3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 수당 : 78,880원 · 초과근무수당 : 시간당 14,790원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2025년 1월 1일부터 수당 변동(1일 80,240원)

7. 담당업무

- 정치관계법 안내
-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3294-8507)에 문의

- 붙임
1.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1부.

2024년 10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접수번호: <미기재>

1. 인적사항 (필수 작성) (※ 본인이 해당하는 □칸에 v 체크)			
지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지원 분야	공정선거지원단
생년월일			
가점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가점 비율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선거운동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선거운동 가능함.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호 해당			
정당 당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당의 당원이 아님.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운전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	개인차량 활용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
주말근무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	야간근무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

2. 자격사항 등 사항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운전면허, 차량등록증, 컴퓨터 관련 자격 등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줄 추가 가능)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공정선거지원단, 사회, 봉사 등) 업무경력 또는 기타활동 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구분	소속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업무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업무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줄 추가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공정선거지원단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선발우대 및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부

1.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위촉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직무 범위, 계약 및 보수조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호 해당 여부와 정당의 당적 보유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유의사항을 비롯한 채용 공고문의 전체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0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 10. .

※ 접수증은 지원서상 기재한 이메일 또는 문자(휴대폰)로 접수여부를 회신하고 접수증은 미교부

자기소개서

- ※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감점 받을 수 있음)하여 주십시오.
- ※ 개인의 성장환경보다는 본인의 경력 및 경험 위주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자유기재 (1 ~ 2페이지 정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차량번호 ※ 채용되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인력풀 관리	<u>근로관계 종료 후 5년</u>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다문화가족정보, 저소득층정보 ※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만 수집·이용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u>최종합격자 발표 후 5년</u> <u>또는 근로관계 종료 후 5년</u>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채용 관련 구비서류, 법적사무처리	<u>최종합격자 발표 후 5년</u>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